

제 27회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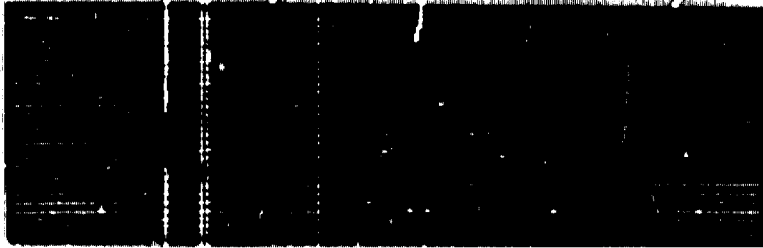
발행인 : 서울특별시 양 덕 시

편집 : 송 보 신 장 김 진 호

전화 75 - 7834

1972. 8. 26.

인쇄 : 서울특별시 용암발전소



차 례

- 유 직
제 1214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요령 시행규칙 3
- 공 고
제 1113호 서울특별시회 용수의 결정..... 4
- 사 명 4

1. 시 공무원은 양모시 임어야 한다.
2. 시회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의용목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감 목 관
1972년 1월 25일

제1 서울특별시규칙 제 2814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서울특별시문화위원의 직에 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청 평가보수관에 속하는 교수의 직에 있는 자.
다. 수도청장 자문위원회의 직에 있는 자.
라. 서울특별시 소속 부장급 이상직 공무원

미. 기타 수도청장직 이면직 직은 자중 및 희망이 있는 자.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부회 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부교섭직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사무장 직제) ①위원회의 감사 1명과 서기 1명만을 둔다.

②서기는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들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직하는 사무를 보고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①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임의의 사유로 위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감사) ①위원회의 감사 1명은 서울특별시청 감사관 또는 감사관을 지낸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장 직제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장 직제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회칙) (1) 위원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회칙을 작성한다.

가. 회의일시

나. 총회원의 구성

다. 심의사항과 예산 및 회계사항

라. 등 사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회칙의 회칙에는 위원장의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9 조 (심의회설립)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 당에게 수직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계획)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83 호

서울특별시계획유수지조정

1. 당시 관내 영등포구 구로유수지 6시 없이 건설부고시 제 314 호 (72. 8. 4) 보 경정 고시 의결을으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신원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8. 16.

서울특별시장

가) 유수지 조정보고서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구로유수지	영등포구신도림동 46	면적 24,025	

사 명

○ 1972. 8. 8

보 목 과

지방보통기사

김 성 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에 의거 승상 3 월에 처함.

서울특별시공고 제 183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

<p>에 의거 결재해 처함.</p>	<p>한강건설사업소 지방교육기사 이 구 용 우회경리 제2과 근무를 명함.</p>
<p>◎ 1972.8.12.</p>	
<p>하 수 과 지방교육기사보 실 송 는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72.8.2경정예마라 72.6.7과 결재서류를 통일자료 취소함.</p>	<p>◎ 1972. 8.23. 서대문보검소 지방교육기원 김 지 한 동대문부보검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부 지방교육기원 배 석 중</p>	<p>◎ 1972. 8.24. 송 보 우 지방행정사무관 고 정 기</p>
<p>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예마라 72.6.7과 파면 처분을 통일자료 취소함.</p>	<p>시민봉사실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의 에 의거 파면 3월제 처함.</p>
<p>성 목 구 지방교육주수 신 대 인</p>	<p>노영철</p>
<p>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예마라 72.6.7과 결재 처분을 통일자료 취소함.</p>	<p>지방부윤주서 (지방교육기원소 박철규님 근무주유직지정중) 을 명함.</p>
<p>도시계획과 지방교육기사 임 영 식 보장과 근무를 명함.</p>	<p>5년4호부윤 주정, 하회보합리과 근무를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관</p>	